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514002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582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5140029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피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천혜진, 신정은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947,615원 및 그 중 169,859,170원에 대하여 2022.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5. 16. 소외 B 주식회사(2018. 5. 28.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80,000,000원(그 후 171,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을 2019. 5. 15., 보증비율을 90%,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0원, 대출과목을 “〈기운〉 B2B 구매자금대출 〈총액외기타〉”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본 보증서는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인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동 취급세칙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취급분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취급세칙 제2조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 “B2B 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 대출기한 2019. 5. 1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마. B2B 구매자금대출은 B2B 전자상거래 상에서 발생한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서 소외 회사와 같은 구매기업이 원고와 업무제휴한 MP1)를 통하여 물건 및 용역을 구매하고, 판매기업은 MP를 통하여 판매대금 추심의뢰서(세금계산서 정보 포함)로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면, 원고가 약정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구매대금을 직접 입금하여 결제하는 B2B 전자상거래 구매자금 결제전용대출을 말한다.

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3회에 걸쳐 연장하여 보증기한이 2022. 5. 13.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위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2022. 5. 13.까지로 연장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18. 5. 25.부터 2021. 7. 6.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8. 5. 25. 실행된 1회 대출부터 2021. 1. 4. 실행된 20회 대출까지의 대출금은 변제하였지만 2021. 8. 20. 실행된 21회 대출부터 2021. 7. 6. 실행된 36회 대출까지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아. 원고는 2021. 12. 21. 피고에게 보증원금 170,689,380원(= 대출잔액 189,654,867원 x 90%)과 이에 대한 이자 2,377,033원을 합한 173,066,413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면책됨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현실적인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하고(제3조 제4호), 전자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전자신용보증서 송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제8조 제1항), 신용보증약관 제8조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4조 제1항 제4호)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차. 이 사건 신용보증서 송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된 대출은 1회 내지 3회 대출의 3건인데, 판매업체는 모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이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거래 세부내역은 1회 대출이 거래품목 '인테리어', 금액 144,364,000원, 2회 대출이 거래품목 '에어컨, 소방', 금액 25,124,000원, 3회 대출이 거래품목 '인테리어', 금액 30,500,000원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들 각 거래에 관하여 B2B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판매업체인 D에 위 각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었다.

카.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6. 2.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채무원리금은 178,947,615원이고, 그 중 원금은 169,859,170원이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2회 대출 및 3회 대출은 소외 회사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로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

나) 아니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실행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특약에 부합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실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데, 1회 내지 3회 대출은 모두 소외 회사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대출이 아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면책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특약에 부합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위반한 대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연 2회 및 3회 대출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하는 소외 회사의 경상적 영업활동에 관하여 실행된 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은 통상적으로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재무활동이나 새로운 수익처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활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고가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계장비 등의 구입비용, 또는 사업장(공장) 및 기존 운전장비의 사소한 유지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위한 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고가의 영업용 고정자산 등(예컨대 건물이나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 기업자산의 규모에 비추어 대규모 또는 고가의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구매자금과 사업목적에 무관하거나 이와 동떨어진 재화 등의 구매자금 등은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661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2회 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대출로 인정된다.

가)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제조, 도매업이고, 종목은 레이스, 자수, 섬유, 무역이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레이스, 섬유 무역, 레이스, 섬유 제조, 도매, 화장품 제조 및 도, 소매업, 자동화설비 제조 및 도, 소매업,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이다.

나) 2017. 12. 말 현재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는 1,075,000,000원, 자본총계는 559,000,000원, 매출액은 1,233,000,000원이고, 2회 대출에서 구입한 '에어컨, 소방' 품목의 금액은 25,124,000원이다.

다) 따라서 위 대출은 그 금액의 크기나 용도에 비추어 고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업목적에 무관하거나 이와 동떨어진 재화 등의 구매를 위한 대출로 보기 어렵고, 고가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계장비 등의 구입비용, 또는 사업장(공장) 및 기존 운전장비의 사소한 유지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위한 대출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8. 5. 25. 자가사업장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회 대출은 이를 위한 에어컨 및 소방시설을 구입한 것으로서 자산 구입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판매기업이 MP를 통하여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하면 금융기관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내용을 파악한 뒤 1~2일 내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매업체 D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이고, 종목은 디자인제작으로 되어 있어 과연 D로부터 '에어컨, 소방'을 구입하는 것이 소외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력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구입한 진성거래에 관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보증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사소한 흠을 들어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대출은행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6406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실제로 허위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금 178,947,615원 및 그 중 원금인 169,859,17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 날인 2022.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1)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한다.